

대전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나127140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석아림

피고, 피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김혜민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1. 11.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1158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0,512,036원, C 주식회사에게

42,165,58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은 소외 회사의 타절금액이나 소외 회사가 체결한 재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협력업체 등에게 임금 등 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전부 보증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종전 주장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의 보험증권 중 ‘보증하는 사항’ 항목의 ‘보증내용’ 란에는 ‘건설하도급 기성금 미지급에 따른 대지급 채무 지급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 란에는 ‘피보험자가 하수급인에게 대지급하는 기성금의 대지급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대하여 담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보험증권의 문언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에게 ‘미지급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기성고는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들에게 식대, 간식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82,677,625원이 소외 회사 또는 그 하수급인들의 미지급 기성고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일반적으로 타절금액은 최종적인 기성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성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산정한 것에 불과하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공사타절합의서에 기재된 타절정산금액인 28억 6,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소외 회사에 지급한 상태이기도 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매경, 판사 이정호, 판사 신옥영